의 안 번 호	제3631호

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5월 23일 유영숙, 권민찬 의원

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6월 2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6월 19일

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6월 19일

2. 제안이유

❍ 본 조례 개정은 경로당에 대한 재정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물리적 기반을 강화하고, 지원 방식을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함으로써, 지역 노인들의 활발한 사회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신축비, 매입비,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 근거 신설(안 제3조 제1항 제5호)

나. 경로당 지원에 대한 차등화 규정 신설(안 제3조 제3항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